

서울특별시 저소득청소년 문화생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1950
----------	------------

2020년 12월 17일
문화체육관광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구체적인 권한과 사무의 행사주체를 상세하게 규정하기 위해 “책무”를 “시장의 책무”로 수정하고자 함.

2. 수정 주요골자

-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(안 제3조).

3. 참고사항 : 없음.

서울특별시 저소득청소년 문화생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저소득청소년 문화생활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3조 조제목 “책무”를 “시장의 책무”로 한다.

〈 수정안조문대비표 〉

제 정 안	수 정 안
제3조(책무) ① ~③ (생략)	제3조(시장의 책무) ① ~③ (제정안과 같음)

서울특별시 저소득청소년 문화생활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거주 저소득청소년에 대한 공연·영화·도서·음반 등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의 관람 및 구입 기회 제공 등을 통해 저소득청소년의 문화생활 활성화를 도모하고 소득수준에 따른 계층 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저소득청소년”이란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2조제2호와 제10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의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을 말한다.

2. “문화생활”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.

가. 공연·영화·도서·음반 등 문화 관련 프로그램을 관람하거나 이를 구입하는 활동

나. 박물관, 전시시설 등 문화 관련 시설을 이용하는 활동

제3조(시장의 책무) ① 서울특별시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저소득청소년에 대한 문화생활 관련 지원 시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저소득청소년의 문화향유가 증진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다양한 문화생활 관련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저소득청

소년이 각자 취향 등에 따른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.

제4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저소득청소년의 문화생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5조(기본계획의 수립 등) ① 시장은 저소득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문화생활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저소득청소년 문화생활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.

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저소득청소년 문화생활 지원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
2. 저소득청소년 문화생활 실태조사 및 분석에 관한 사항
3. 저소득청소년 문화생활 관련 프로그램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
4. 저소득청소년 문화생활 관련 법·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
5. 저소득청소년 문화생활 지원을 위한 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
6. 그 밖에 저소득청소년 문화생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저소득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6조(지원사업) ① 시장은 저소득청소년의 문화생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문화생활 관련 프로그램의 발굴·보급 지원사업
2. 문화생활 관련 시설의 확충 및 이용 지원사업
3. 문화생활 관련 교류 및 동호회 활동 지원사업
4. 문화생활 관련 정보제공 및 교육 지원사업

② 시장은 저소득청소년의 문화생활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생활에 수반되는 교통비 등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7조(위원회의 설치 등) ① 시장은 저소득청소년 문화생활 지원 시책 등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저소득청소년 문화생활 지원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할 수 있다.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.

1.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·변경에 관한 사항
2.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 추진실적의 분석·평가에 관한 사항
3.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저소득청소년 문화생활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

제8조(위원회 구성 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③ 위촉직 위원은 저소득청소년 문화생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, 당연직 위원은 저소득청소년

문화생활 지원 관련 부서의 국장급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.

제9조(위원회 운영 등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,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,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10조(위원의 임기)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,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

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11조(위원장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,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12조(협력체계 구축) 시장은 저소득청소년 문화생활 지원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·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13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